



통지번호	CP254
과세 연도	2005년 12월 31일
통지 일자	2009년 3월 2일
고용주 ID 번호	[REDACTED]
연락처	전화 [REDACTED]

귀하의 2005년 양식 990에 관한 안내사항

세금 보고서를 전자식으로 보고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음

귀사에서 위 과세 기간에 대하여 종이 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. 귀하의 보고서를 전자식으로 보고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.

귀하가 즉시 취해야 할 조치

귀사 또는 민간재단이 전자식으로 보고하도록 요구 받을 경우, 최대한 신속히 전자 보고를 해야 합니다. 귀사가 이 보고서 기한 이후에 전자식으로 제출하면 지연 제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 종이 보고서는 제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.

전자 제출 요건

- 귀사가 면세업체로서 자산 총액이 천만 달러 이상이고 연간 250건 이상의 보고서를 제출할 경우 반드시 Form 990을 전자식으로 제출해야 합니다.
- 귀사가 민간재단이거나 섹션 4947(a)(1)에 근거한 면세 자선신탁으로 민간재단으로 간주되면서 연간 250건 이상의 보고서를 제출할 경우, Form 990-PF를 반드시 전자식으로 제출해야 합니다.

250건 보고서 요건에 포함되는 사항:

- 소득세 보고서
- 고용세 보고서
- 소비세 보고서
- 정보 보고서 - 예: Form W-2, 941, 1099 등

귀하가 지연 제출하게 될 경우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되면 지연 보고 이유 설명서를 전자 보고서에 포함시켜 제출하십시오.

귀사가 전자 보고를 할 필요가 없다고 확신하면, 첨부된 답변 양식을 작성하여 동봉한 봉투에 넣어 신속히 보내 주십시오. 원할 경우 팩스 [REDACTED] 번호로 송부하셔도 됩니다.

귀하가 연락하지 않을 경우

- 귀사가 전자 보고를 해야 하지만 종이 보고서만 제출하였다면, 연례 보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입니다.
- 귀사가 전자 보고를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경우, 미제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
통지번호	CP 254
과세 연도	2005년 12월 31일
통지 일자	2009년 3월 2일
고용주 ID 번호	[REDACTED]
연락처	[REDACTED]
페이지 2 / 4	

중요한 알림 정보

- 귀하가 3년 연속 연례 전자 제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, 귀하의 면세 지위가 상실됩니다.
- 면세 지위가 상실되면 해당 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용자 수수료를 납부한 후 면세 지위 신청을 다시 해야 합니다.

전자 제출 요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www.irs.gov를 방문하여 “e-file for Charities and Non-Profits”로 검색하십시오.

면세 조직의 *EO Update*와 면세 조직 및 해당 납세 대리인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뉴스레터를 받으려면 www.irs.gov/eo를 방문하여 Topics 제목 아래에서 “EO Update”를 클릭하십시오.

추가 정보

- 참고 사이트: www.irs.gov/cp254.
- 세무 양식, 지침 또는 간행물이 필요할 경우 www.irs.gov를 방문하거나 1-800-TAX-FORM (1-800-829-3676)으로 전화하십시오.
- 이 통지서는 잘 보관하십시오.

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연락 주십시오.

